

# 1997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

1997

한국노동연구원

## 目次

### 要約

#### I. 序論

1. 최저임금제와 영향률
2. 생계비의 의미
3.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경과

#### II.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定概要

1.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정의
2.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의 구조
3. 최임심 생계비 산정개요

#### III. 生計費 算定過程

1. 소비지출
2. 비소비지출

#### IV.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1. 본 연구에서의 개선점
2. 1인가구 18세에 대한 연령조정
3.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4. 생계비 추정에 대한 과제

### 參考資料

### 參考文獻

## 表目次

- <표 I -1>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 <표 I -2> 적용년도별 수혜근로자 및 영향률
- <표 II -1>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구조
- <표 III -1> 1인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 <표 III -2> 표준가구 대 최빈값 계층 평균 소비지출액 비교
- <표 III -3>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 <표 III -4>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 <표 III -5>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 <표 III -6> 적용환산승수(1994~96년도 3개년 평균치)
- <표 III -7> 국민영양보고서에 의한 총섭취 끼니수 중의 외식빈도 및 비율
- <표 III -8> 식품군별 1인 1일 권장·공급 및 섭취량 비교
- <표 III -9> 국민 1인당 에너지 공급량과 섭취량
- <표 III -10> 순식료품비를 위한 식료품 명세(1인 18세 근로자, 1일)
- <표 III -11>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 <표 III -12>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 <표 III -13> 가구별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소비지출
- <표 III -14> 1996년 소득세 세율
- <표 III -15> 가구별 표준생계비의 조세액 및 사회보장분담금
- <표 III -16> 표준보수월액 조건표
- <표 III -17> 오물세

<표 III-18> 가구별 표준생계비의 비소비지출

<표 IV-1> 가구원수별 평균 연령

<표 IV-2> 가구원수별 생계비

<표 IV-3> 전년대비 상승률

## 그림目次

[그림 I-1] 생계비의 종류

[그림 II-1] 소비지출액의 누적도수 분포도

[그림 II-2] 표준생계비와 가구 구성

[그림 II-3] 최임심 표준생계비 산정방법

[그림 III-1] 식료품비 산정방법

[그림 IV-1]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

## <要約>

### 1. 생계비 인상률 및 수준

●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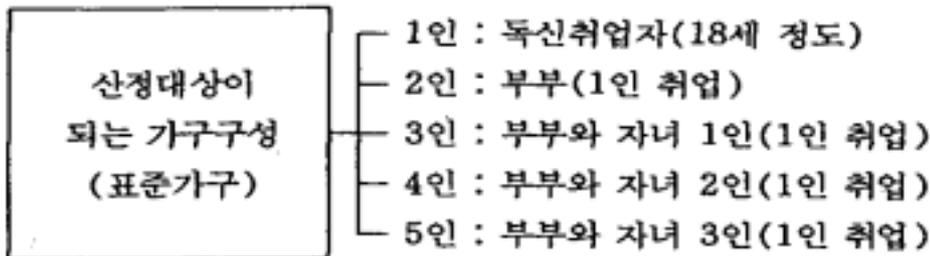
- 1인가구 기준 364,866원으로 동일한 방법의 1년전(337,671) 대비 8.1% 상승
- 4인가구 기준 1,422,019원으로 동일한 방법의 1년전(1,327,847)대비 7.1% 상승

● 중요점

- 기존의 생계비 산정방법 사용
- 1인가구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의 표준생계비 수준 338,217원에 비하여는 7.9% 상승한 것임.
- 기존의 연구와 차이점
  -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분기별 자료가 아닌 연평균 자료 이용
  - 최빈계층 구간을 교정하여 사용
  - 환산승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개년 평균값을 사용

● 중요점에 대한 설명

- 1) 1인가구는 18세 단신근로자로 대표되므로 이를 반영함.
  - 즉, 전체평균 소비액과 18~24세 연령그룹의 비율은 0.8임. 따라서 0.8을 조정치로 사용함.
  - 최빈계층 소비지출, 18~24세/전체연령 평균은 1996년에 0.806, 1995년에 0.802, 1994년에는 0.793임.
-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8쪽, 29쪽 참조.

● 표준생계비 산정방법, 자료 및 결과

- 자료 : 도시가계(통계청)
    - 1994. 4/4 ~ 1995. 3/4를 1995년 자료로 사용
    - 1995. 4/4 ~ 1996. 3/4를 1996년 자료로 사용
  - 방법
    - 각 비목에 대하여 가구인원수별 회귀분석으로 1인가구 각 비목별 소비지출 비용 추정. 이때 최빈값을 이용하여 조정된 비용이 비목별 종속변수임. 최빈계층에 대하여만 샘플로 취함. 최빈값과 평균값 사이의 비율을 조정치로 사용
- $$Y = a \times n^2 + b \times n + e;$$
- n: 가구원수, e: 에러항
- 식료품비는 국민영양권장량(1996년 기준)을 기준으로 『종합물가정보』와 『유통물가통계』, 『물가지표』 등을 이용하여 산출 → 마켓·바스켓(market basket) 방식. 국민영양권장량을 통한 1일 단신근로자(18세 기준) 식료품비 산정은 김초일 박사(식품위생연구원)께 의뢰하여 산출.
  - 비소비지출 항목은 소비지출(식료품 포함)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득조건표를 이용하여 구함 → 실제 비소비지출(1990년 노·사간 합의)
- 결과 : 다음 표와 같음.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의 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433,918	347,134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식료품	147,400	117,920	272,122	374,168	447,868	493,222
주거비	102,468	81,970	190,953	260,814	316,703	349,304
광열·수도	17,815	14,252	32,661	45,131	54,632	60,570
가구·집기	12,242	9,794	21,263	28,350	32,216	33,505
피복·신발	23,436	18,749	41,990	55,661	64,450	67,379
보건·의료	17,601	14,081	29,986	49,953	46,935	49,542
교육·교양	16,747	13,398	40,672	76,558	117,230	167,471
교통·통신	30,458	24,366	52,900	68,930	78,548	83,358
기타 소비	65,756	52,605	116,338	154,274	174,507	184,624
영질계수	34.0	34.0	34.1	33.6	33.6	33.1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는 전연령그룹의 0.8%이므로, 1인가구 소비지출 연구결과에 0.8을 곱하여 조정한 수치임.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의 비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433,918	347,134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추정근로소득	542,397	433,918	998,607	1,392,299	1,666,361	1,861,218
조세 및 사회보장	17,467	17,142	45,939	70,325	86,572	100,743
비소비지출	18,057	17,732	47,118	72,093	88,930	103,691
조세액계	0	0	12,320	25,316	32,293	38,840
소득세	0	0	11,460	23,550	30,040	36,130
주민세	0	0	860	1,766	2,253	2,710
사회보장분담금계	17,467	17,142	33,620	45,009	54,279	61,904
의료보험	6,840	6,840	13,224	17,632	21,280	24,320
국민연금	9,000	9,000	17,400	23,200	28,000	32,000
고용보험	1,627	1,302	2,996	4,177	4,999	5,584
기타 비소비	590	590	1,179	1,768	2,358	2,948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는 전연령그룹의 0.8%이므로, 1인가구 소비지출 연구결과에 0.8을 곱하여 조정한 수치임.

<가구원수별 생계비>

(단위 : 원)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433,918	347,134	798,886	1,113,839	1,333,089	1,488,975
식료품	147,400	117,920	272,122	374,168	447,868	493,222
주거비	102,463	81,970	190,953	260,814	316,703	349,304
광열·수도	17,815	14,252	32,661	45,131	54,632	60,570
가구·집기	12,242	9,794	21,263	28,350	32,216	33,505
피복·신발	23,436	18,749	41,990	55,561	64,450	67,379
보건·의료	17,601	14,081	29,986	49,953	46,935	49,542
교육·교양	16,747	13,398	40,672	76,558	117,230	167,471
교통·통신	30,458	24,366	52,900	68,930	78,548	83,358
기타 소비	65,756	52,605	116,338	154,274	174,507	184,624
비소비지출	18,057	17,732	47,118	72,093	88,930	103,691
조세액	0	0	12,320	25,316	32,293	38,840
사회보장	17,467	17,142	33,620	45,009	54,279	61,904
기타 비소비	590	590	1,179	1,768	2,358	2,948
생계비	451,975	364,866	846,004	1,185,932	1,422,019	1,592,666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 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전년대비 상승률>

(단위 : %)

	1인	1인*	4인
1996. 9~1997. 8 1인가구 표준생계비 (423,610원)	6.7	7.9	-
같은 방법 전년대비	8.2	8.1	7.1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는 전연령그룹의 0.89%이므로, 1인가구 소비지출 연구결과에 0.8을 곱하여 조정한 수치임.

## 2. 기타 중요사항

### 1) 가구는 2인부터 6인가구까지만 사용

- 199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관련 2차간담회에서 참석자들 전원이 동의하였음.
- 그 이유는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생계비관련 평균값들이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

### 2) 저축에 관한 사항

- 저축액은 표준생계비에 넣지 않았음. 이는 기존의 연구와 최심위에서의 그동안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비소비지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고용보험비) 계산시에 표준근로소득 추정시 저축률이 필요하므로, 저축률을 20%로 계산함.
- 기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20%로 추정하여 계산해 왔음.
- 저축추진중앙회에서는 소득의 35%
- 도시가계상의 저축자료는 값이 너무 높음-소비지출계의 50% 이상 수준임(도시가계 회귀분석에 의한 1인가구 추정값 20만원).

### 3) 외식비용

- 식품연구원 및 보사연, 보사부 등에서는 전체 식품비 중 40%가 외식으로 조사됨.
- 실제 연구에서는 최빈계층이므로 20%만 계상함. 이유는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및 노총의 연구에서도 실제 외식은 20% 정도임.
- 윤진호(노총 1996년 연구) : 35%(외식 20%, 가공식품 15%)
- 도시가계 : 42%(외식 24%, 기호 18%)

## I. 序論

### 1. 최저임금제와 영향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이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저임금근로자 보호제도이다.<sup>1)</sup>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실제로 시행하게 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의 완화,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하고, 둘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 셋째,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표 I -2>에서 보듯이 1988년 도입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으나 제조업에만 국한하였고 1989년에는 건설업 및 광업이 추가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전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 고용형태별 구분은 없다. 즉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체의 임시· 일용·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시기는 1993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용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9월 1일 ~ 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유는 매년 연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사간 임금교섭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최저임금제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수혜대상을 <표 I -2>에서 보면 1989년의 경우 수혜대상 영향률이 전체 근로자의 10.7% 수준으로 정점을 이룬 적이 있으나 그후 계속 영향률이 줄어들어 1996년 9월 ~ 1997년 8월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률은 2.4% 정도이다.

평균임금 수준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표 I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0.3~0.4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비록 비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만 그 목표수치는 0.4~0.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sup>2)</sup> 특히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음· 식료품 물가가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I -1>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88	'89	'90	'91	'92	'93	'94.1~ '94.8	'94.9~ '95.8	'95.9~ '96.8	'96.9~ '97.8	
(1) 최저임금 (사급)	462.5	600	690	820	925	1,005	1,085	1,170	1,275	1,400	'94년은 '94.1~ '94.8 적용
(2) 최저임금 (일급)	3,700	4,800	5,520	6,560	7,400	8,040	8,680	9,360	10,200	11,200	.
(3) 최저임금 (월환산급)	111,000	144,000	165,600	192,700	209,050	227,130	245,210	264,420	288,150	316,400	.
(4) 매월노동 정액급여	316,047	374,969	443,829	521,982	586,586	670,093	746,800	787,000*	876,467*	-	
(5) (3)/(4) × 100	35.1	38.4	37.3	36.9	35.6	33.9	32.8	33.6	32.9		'88~'96.8 평균 35.11%

주 : 1) 1994년과 1995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2) 1995년과 1996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6. 12.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I-2> 적용년도별 수혜근로자 및 영향률

(단위 : 개, 명, %)

	적용업종	적용대상 사업체	적용대상 근로자수	수혜근로자	영향률
1988	10인이상제조업	34,984	2,266,675	94,410	4.2
1989	10인이상제조업 광업, 건설업	39,977	3,052,555	327,954	10.7
1990	10인이상전산업	78,016	4,386,041	187,405	4.3
1991	10인이상전산업	82,923	4,556,075	393,183	8.6
1992	10인이상전산업	88,771	4,620,164	391,502	8.5
1993	10인이상전산업	98,656	5,045,064	227,519	4.5
'94.1~'94.8	10인이상전산업	103,774	4,916,322	102,312	2.1
'94.9~'95.8	10인이상전산업	112,374	4,863,923	103,033	2.1
'95.9~'96.8	10인이상전산업	117,658	5,380,697	103,191	1.9
'96.9~'97.8	10인이상전사업	-	5,240,135	127,353	2.4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6. 12.

주석1)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96) 5쪽.

주석2) Ehrenberg and Smith(1994) p.80 참조.

## 2. 생계비의 의의

1986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여기에서 생계비란 가계의 단위인 한 가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생계비 파악방법에 크게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눌 수 있다.  
 실태생계비란 각 가구가 현실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조사한 것을 말하며, 이에 반하여 이론생계비란 일정한 생활규모(모형)를 설정하여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이론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또한 생계비는 정책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어떤 생활모형(수준)을 설정하는가에 의하여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생활모형으로서 표준적인 생활을 취하면 '표준생계비(Normal Level)', 최저생활을 설정하여 산출하면 '최저생계비(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가 된다. 이외에도 생계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구제 또는 생활보호가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수준인 '피구홀비(Pauper Level)', 그 위의 수준으로 단순히 최저한의 생존에 필요한 수준에 머무는 '최저생존비(Minimum of Subsistence Level)'가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유락생계비(Health and Decency Level)'등이 있다.<sup>1)</sup> 결국 이러한 5가지 수준의 생계비는 그 측정방법에 따라 각각 다시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준별 생계비는 실제보다는 이론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이론생계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sup>2)</sup>

우리나라에서 실태생계비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도시가계연보』로 발행)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근로자생계비조사」가 있다. 이론생계비로는 한국노총이 임금교섭 기초자료로 산정해 온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산정해 온 '표준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추계해 온 '최저생계비'가 대표적이며 그외 관련기관 또는 개별 연구자들이 추계한 생계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그림 I-1]이다.

주석1) 한국노총에서는 임금인상요구 지침에서 이른바 생계비 규율로 유락생계비 = 표준생계비×1.5, 최저생계비 = 표준생계비 × 0.8, 최저생존비 = 표준생계비 × 0.5로 정한 바 있다.

주석2) 본 내용은 그동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계속된 연구의 기존 분류에 따르고 있다.

### 3.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경과

이와 같이 생계비는 산정목적과 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생계비'가 산정되

[그림 I-1] 생계비의 종류



어 최저임금 수준 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초기의 '표준생계비'는 일본 인사원의 생계비 추정방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노·사·정의 관련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1988년에는 노·사, 학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표준생계비를 산정하였다(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근로자표준생계비 보고서」, 1988. 11.).

1989년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생계비분과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생계비로 표준생계비, 한국노총의(최저임금을 위한) 최저생계비 및 최심위사무국에서 조사하는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의 생계비가 같은

이론생계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생계비 전문위원회는 최심위 산하 연구위원회에 생계비 단일화 방안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 위원 중 노·사·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실무소위는 여러 번에 걸친 논의의 결과 1990년 2월 생계비 추정방식은 현행 표준생계비 방식, 생계비 산정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되, 생계비의 명칭은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최임심 생계비로 칭함)'로 하고 생계비 산출과정에서 노·사가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위원회 실무소위의 합의사항을 최심의 생계비 전문위원회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과 1990년에는 각각 다음 해의 최저임금 수준 산정을 위한 표준생계비의 산정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박영범·조우현, 『표준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8, 박영범, 『1991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원, 1990.8., 강순희,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1995). 그러나 1992년도부터는 원시자료 이용상의 애로로 인하여 표준생계비의 산출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5년부터 재개되었다.

참고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되어 온 생계비를 [그림 I -1]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한다면 표준생계비라 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심의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산정해 온 '표준생계비'는 실제 계산시 표준가구(최빈계층)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계층의 소비지출액을 또다시 최빈값/평균값으로 조정하여 하향시킨 것이므로 '표준생계비'라 명명하기에는 곤란하고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최임심 생계비)라 해야 그 내용상 타당하다. 따라서 지난해(1996)부터 '표준'이라는 부분은 삭제시키고 본 연구의 제목을 『1997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최임심 생계비 연구)로 하였다.

제Ⅱ장에서는 표준생계비 구조 및 산정개요를 정리하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최빈값을 이용하여 1997년 9월~1998년 8월 적용 표준생계비의 추정결과를 정리하였다.

## II.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定概要

### 1. 最低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정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최빈계층의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생계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적인 생활수준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생계비 산정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민생활의 생계비 실태조사를 통해 가계지출의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추출하여, 이 표준적인 근로자 세대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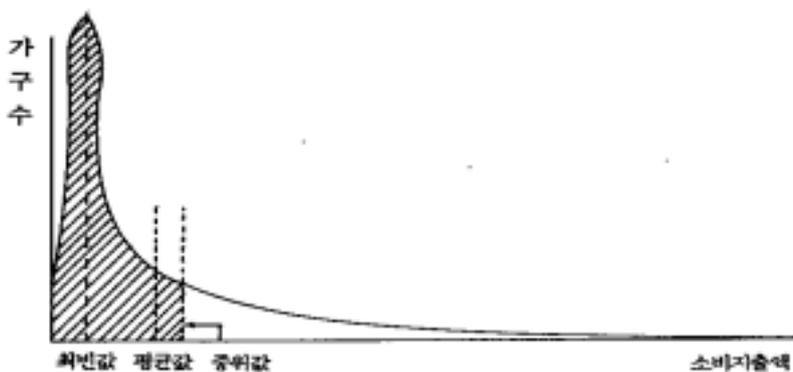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1988년 5~7월간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통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로서 최빈값 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비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여기서는 가장 빈도수가 많은 계층이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이들의 생계비를 이용하여 산출된 것을 표준생계비로 정의하고 여기서 최빈값과 평균값간의 조정치를 감안한 소비지출액을 '최저임금심의 위한 생계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민생활실태(「가계조사」)를 통해 구한 가계지출 표준계층의 최저생계비로서 결국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근로자가구의 생계비를 대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계비의 분포는 [그림 II-1]과 같이 왼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나타낸다. 소득 및 소비의 통계적 도수분포는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를 로그를 취하면 정규분포의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 통계적 용어로 이를 로그노말 분포(Lognormal Distribution)라 한다. 이러한 분포에서는 최빈값이 중요한 분석통계로 등장한다. 산출평균치나

중위값은 고액 또는 저액지출자인 극단의 영향을 받는데 비해 최빈값은 안정적이어서 주어진 계층분포의 대표성도 높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빈값이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최빈계층에 대한 최저임금연구에서는 최빈값 주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분석시에 최빈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인 조정치를 각각의 소비지출액에 곱하여 이를 최저임금계층 소비지출액으로 가정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표준생계비 계산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자료인데, 1995년의 소비지출액을 최고치와 최저치를 1000분위하여 누적도수분포표를 구한 결과를 보면 극단적인 로그노말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sup>

[그림 II-1] 소비지출액의 누적도수 분포도



(최고치 - 최저치) × 0.001 → 54% 누적도수

(최고치 - 최저치) × 0.052 → 90% 누적도수

최고치 22,744,790원, 최저치 86,350원, 누적도수 34,240명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1994. 4/4~95. 3/4)』 원데이터프.

주석 1) 소비지출에 대한 1,000분위 누적도수표를 부록에서 참조.

## 2.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를 구조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이하 최임심 생계비라 함)는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며 소비지출은 다시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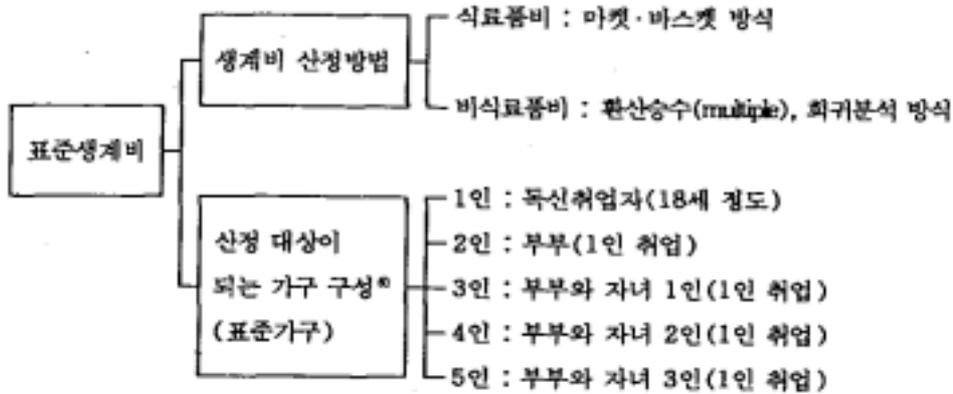
각 생계비 구성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1>에 수록되어 있는데, 표준생계비 산정은 ①식료품 ②주거 ③광열·수도 ④가구·집기 ⑤피복·신발 ⑥보건·의료 ⑦교육·교양 ⑧교통·통신 ⑨기타 소비지출 및 ⑩비소비지출의 10개를 기본단위로 한다.

그런데 가구 구성의 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의 형태에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생계비 수준도 변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표준적인 가구 선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으로 있고 그들 중 1인만이 취업하고 있는 가구를 표준가구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수별로 생계비를 산정한다.

<표 II-1>최임심 표준생계비의 구조

생계비	소비지출	식료품	2,600Kcal 기준(1995년에 개정됨)
		주 거	월세, 주택설비수리비, 기타주거비(전세 및 자가평가액)
		광열·수도	전기료, 연료비, 수도료
		가구·집기, 가사용품	일반가구, 가정용가구, 가사 서비스
		피복·신발	의의, 스웨터·셔츠, 내의, 기타 피복, 신발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교육·교양오락	교육, 문방구, 교양오락
		교통·통신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
		기 타	담배, 잡비, 이·미용품,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비소비지출	조 세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장분담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 타	쓰레기봉투(오물세)	

<그림 II-2>표준생계비와 가구 구성



주 :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8쪽, 29쪽 참조.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

주석6)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가구인원에 대응하는 가구주의 연령을 계산하고 있다.

가구원수	연령 범위	평균 연령
2인	28.2~29.4	28.8
3인	29.4~31.7	30.6
4인	31.7~33.9	32.8
5인	33.9~47.4	40.7

주 : 가구인원 5인의 연령범위의 상한은 第1자가 18세가 되는 가구주의 연령 47.4세로 함.

- 1인가구의 연령은 18세로 가정. 1인가구의 평균 연령으로 18세와 28.2의 중간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구한 1인가구의 생계비는 독신가구의 형성과 동시에 필요한 생계비로 보기 때문이다.
- 여기서 표준가구를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 더욱이 자녀가 취업하지 않는 가구를 한정하였으므로 第1자가 고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면 5인표준가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하였다.

### 3.최임심 생계비 산정개요

이러한 표준생계비의 산정은 식료품비는 일정한 영양섭취열량(칼로리)을 기초로 '마켓·바스켓'을 작성하여<sup>1)</sup> 구하고 비식료품비는 도시가계조사상의 실태생계비(가구조사)의 최빈값을 활용, 회귀분석 및 환산승수(multiple) 방식에 의하여 구한다.

1)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각 비목에 대하여 가구인원수별 회귀분석으로 1인가구 각 비목별 소비지출 비용 추정. 이때 최빈값을 이용하여 조정된 비용이 비목별 종속변수임. 최빈계층에 대하여만 샘플로 취함.

$$Y = a \times n^2 + b \times n + e$$

$n$ : 가구원수,  $e$ : 에러항

자료는 도시가계(통계청)

1994.4/4 ~ 1995.3/4를 1995년 자료로 사용

1995.4/4 ~ 1996.3/4를 1996년 자료로 사용

2)식료품비는 국민영양권장량(1997년 기준)을 기준으로 『유통물가통계』와 『종합물가정보』 등 민간물가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마켓·바스켓 방식

3)비소비지출 항목은 법령상 실무담액으로 산정된다.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득조건표를 이용하여 구함→실제 비소비지출(1990년 노·사간 합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각 비목계산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각 비목별 2~6인가구 최빈값을 구한다.

2)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Y_i = a_i n^2 + b_i n + e_i$ 을 이용하여 각 비목별 1인취업 2~5인가족 및 1인가구 소비액을 추정한다(대상 2~6인가구, 최빈값 계층).

3)각 비목별 추정된 값을 각 비목별 1인취업 4인가구 평균 소비액으로 나눈 값이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이때 분자는 각 비목별 최빈값, 분모는 4인가족 평균 소비액.

4)비식료품비는 환산승수에 '4인가구 비식료 비목별 평균 소비액 환산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1~5인 가족의 비식료품비 계산.

이때, '4인가구 비식료 비목별 평균 소비액 환산치'(Yr)란 '전체가구 평균소비액'(Ya)을 기준으로 회귀방정식상의 X=4일 때의 Y값(Y4)과 X=평균 가구원수일 때의 Y값(Yn)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즉,  $Y_r = Y_a \times (Y_4 / Y_n)$

식료품비 산정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국민영양권장량(1인당 2,600kcal)을 이용한 18세 성인남자의 1일 식단구성은 식품위생연구원 김초일 박사가 만든 자료에 기초함.

구체적으로는 18세 성인남자가 중등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열량은 2,600kcal인데, 1994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식사의 17%가 가정식이 아니므로 그 83%만을 충당하면 된다는 가정 아래

보건사회부의 「국민영양조사」, 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 그리고 「식품생산통계」를 이용하여 2,158kcal를 위한 식품구성을 작성한다. 한편 식료품비 가운데 기호식품 및 외식비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식료품비에 대한 비중 20%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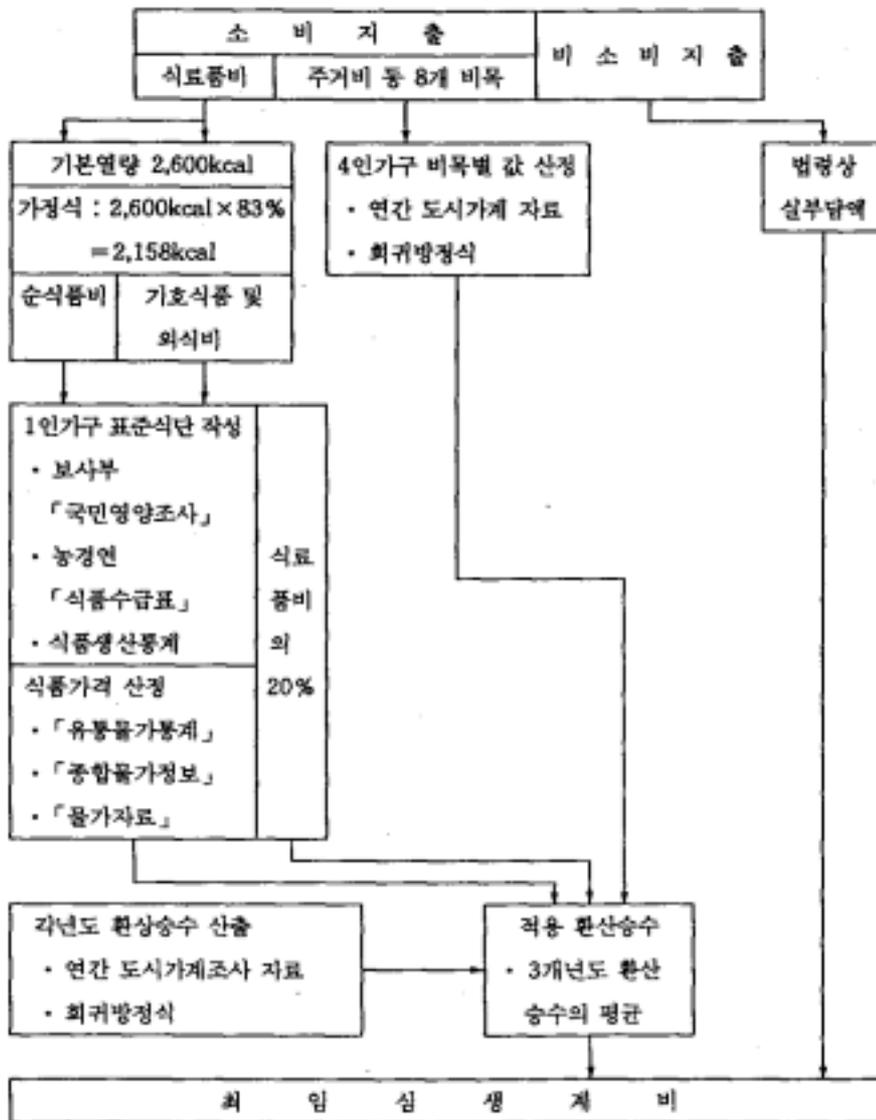
2)실제로 계산되는 식료품비는 83%이므로 20%의 외식비를 추가함에 따라 80%로 다시 환산하여 계산한다.

3)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 『종합물가정보』, 『유통물가통계』, 『물가자료』 등의 민간물가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 1일 식료품비를 계산한 후 월간비용을 30.4일을 곱해서 계산해 냄.

4)1인가구 월식료품비를 도시가계조사에서 구한 환산승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2~5인가족의 식료품비를 계산해 냄.

이상에서 설명한 최임심 표준생계비 산정방법은 [그림 II-3]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II-3]최임식 표준생계비 산정방법



주석 1)마켓·바스켓(market basket)이란 어떤 일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비재 및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물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 Ⅲ. 生計費 算定過程

#### 1. 소비지출

소비지출관련 표준생계비 비목은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나누어지는데 식료품비는 '마켓·바스켓'방식에 의한 1인가구의 식료품비가, 비식료품관련 각 비목(주거비 등 8개 비목)은 회귀방정식 추정에 의한 4인가구의 비식료품관련 비목의 값이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비관련 각 비목의 값을 기초로 각 비목별 가구간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각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 구성 비목값이 산정된다. 우선 환산승수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를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가구별 소비지출액을 계산하기로 하자.

#### 가. 환산승수

##### 1) 환산승수의 정의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 생활환경, 가구원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가운데 가구원수의 차에서 기인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가구원수간 생계비의 상관관계로서 계산되는 것이 이른바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환산승수는 각 가구의 비목별로 추정되는데 비목 i의 환산승수는

$$\frac{\text{해당가구 } i\text{비목 최빈값 추정치}}{4\text{인가구 } i\text{비목 평균 지출액}} \dots\dots\dots(\text{식 } 1)$$

로 정의된다.

이러한 환산승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는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사용한다.<sup>1)</sup>

##### 2) 4인가구 비목별 평균 지출액 산정

1997년도의 최임심 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1996년도(1995년 4/4~1996년 3/4)<sup>2)</sup>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소비자지출의 구성비목 중 주거비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데, 즉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상에 나타나는 주거비는 순수히 현금의 지출과 관계가 되는 월세와 그외의 주택수리 비용등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회비용 개념인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계비의 개념과 관련해 생각할 때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아 이후로는 두 개의 범주를 모두 계산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sup>3)</sup>

이와 같이 4인가구를 포함한 2~9인가구의 비목별 평균 지출액의 계산결과는 <표 III-1>에 나타나 있다.

##### 3)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다음으로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각 가구의 비목별 최빈값을 추정하기로 하자. 이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 가) 제1단계: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의 설정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1996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연평균을 사용하여 우선 각 가구별 log를 붙인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

<표 III-1> 1인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단위 : 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소비지출계 <sup>1)</sup>	1,009,270	1,134,518	1,404,523	1,493,567	1,460,341	1,505,526	1,586,482	1,562,472
식료품 <sup>1)</sup>	278,398	321,951	391,903	428,428	486,553	434,472	498,933	632,327
주거비	44,945	51,282	55,893	44,145	24,504	56,357	7,488	63,141
광열·수도	41,689	49,839	57,434	70,172	82,415	67,157	54,615	94,396
가구·집기	46,095	67,632	64,186	62,452	30,430	49,886	35,253	134,336
피복·신발	79,923	82,478	103,385	96,824	87,906	126,490	159,827	105,168
보건·의료	58,655	55,687	64,816	77,773	57,269	128,491	125,293	99,040
교육·교양	73,265	135,623	251,522	310,768	267,368	314,810	249,040	151,218
교통·통신	150,057	138,573	167,062	144,281	165,347	87,005	188,550	92,108
기타 소비	236,243	231,453	248,322	258,724	258,549	240,858	267,483	190,738
소비지출계 <sup>2)</sup>	1,356,148	1,518,331	1,882,815	2,015,954	2,147,316	1,931,401	1,939,432	1,875,177
주거비 <sup>2)</sup>	337,211	372,476	491,788	526,565	698,691	407,564	360,439	277,995
비소비지출 <sup>3)</sup>	71,578	94,919	145,399	125,767	182,772	78,137	123,560	106,141
저축 <sup>4)</sup>	674,711	818,054	1,074,971	1,179,718	879,022	548,169	1,679,246	1,380,770

- 주 : 1)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2)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한 수치임.  
 3) 조세와 사회보장, 기타 비소비의 합계를 의미함.  
 4) '최임심 생계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참조를 위한 수치임.

(u)과 분산( $\sigma^2$ )을 계산하여 최빈값(m)을 구한다.<sup>4)</sup>  
 최빈값(mode) 산정

mode =  $e^{(\mu - \sigma^2)}$  (참고 : lognormal distribution)을  $dF/dx=0$ 하면 구  
 해짐)

$$f(x; \mu, \sigma^2) = \frac{1}{x\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infty}(x)$$

$$\begin{aligned} \frac{df(x; \mu, \sigma^2)}{dx} &= -\frac{1}{x^2\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1}(x) \\ &+ \frac{1}{x\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1}(x) \cdot \left(-\frac{1}{2\sigma^2}\right) \times (2)x(\log_e x - \mu) \cdot \frac{1}{x} \\ &= \frac{1}{x^2\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_e x - \mu)^2\right] I_{0, -1}(x) \left[-1 + \left(-\frac{1}{\sigma^2}\right) \times (\log_e x - \mu)\right] \\ &= 0 \end{aligned}$$

따라서  $-\frac{1}{\sigma^2}(\log_e x - \mu) = 1$  이고

$\log_e x - \mu = -\sigma^2$ 이며,

$\log_e x = \mu - \sigma^2$ 이므로,

$x = e^{\mu - \sigma^2}$ 에서 최빈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m_j = e^{(\mu - \sigma^2)} \dots\dots\dots(\text{식 2})$$

- 여기에서  $m$  = 소비지출총액의 최빈값
- $\mu$  =  $\log$ (소비지출총액)의 평균
- $\sigma^2$  =  $\log$ (소비지출총액)의 분산
- $j$  = 해당가구(2인, 3인, 4인, 5인)

여기에서 최빈값 계층의 구간을  $m \pm \frac{1}{2}\sigma$  로 설정되는데  $\sigma^2$ 가 소비지출 총액의 분산이므로  $\sigma$ 는 소비지출 총액의 표준편차이다.<sup>5)</sup> 그런데 여기에서 구한 소비지출 총액의 최빈값( $m$ )과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값  $(\bar{u})$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가구별 조정계수가 필요한 바, 조정계수는

$$\frac{m_j}{\bar{u}_j} \dots\dots\dots(\text{식 3})$$

여기에서  $\bar{u}$  =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

최빈값 계층의 가구·비목별값에 해당가구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 다음 단계 회귀방정식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이다. [그림 II-2]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지출 총액 및 각 비목금액은 표준가구 전체의 경우보다 낮아지게 된다. <표 III-2>는 표준가구 전체와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지출 총액을 각 가구별로 비교하고 있다.

[그림 III-2]표준가구 대 최빈값 계층 평균 소비지출액 비교

(단위 : 원)

	표준가구 전체(A)	최빈값계층 가구(B)	B/A
2인	1,356,148	970,152	0.72
3인	1,518,331	1,096,248	0.72
4인	1,882,815	1,322,085	0.70
5인	2,015,954	1,376,734	0.68
6인	2,147,316	1,308,481	0.61
7인	1,931,401	1,419,603	0.74
8인	1,939,432	1,699,173	0.88
9인	1,875,177	1,667,290	0.89

나)제2단계: 회귀방정식 추정

그런데 여기에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1인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구한 2~6인 최빈값 계층 자료를 이용하여 각 비목별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해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회귀방정식은 가구원수를 독립변수로

$$Y = a_n n^2 + b_n n + e_i (a_i < 0, b_i > 0 \text{로 기대됨}) \quad (\text{식 4})$$

여기에서 Y=비목별 지출액 n=가구원수 i=해당비목 e=오차항으로 정의된다.<sup>6)</sup>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의 계수 추정치가 <표 III-3>에 수록되어 있다.<sup>7)</sup>

<표 III-3>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a	b	R <sup>2</sup>
소비지출	-40,524	473,417	0.93
식료품	-8,875	112,468	0.87
주거비	-11,333	126,766	0.67
광열·수도	-1,036	17,157	0.65
가구·집기	-1,328	12,731	0.21
피복·신발	-2,631	26,333	0.41
보건·의료	-2,093	19,593	0.24
교육·교양	4,465	11,617	0.49
교통·통신	-3,800	35,856	0.55
기타 소비	-7,862	73,801	0.65

주 : 모든 변수의 t값은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제3단계: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산정

전 단계에서 구한 비목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구한 결과가 다음 <표 III-4>에 나타나 있다.

4) 환산승수의 산출

앞에서 환산승수는

$$\frac{\text{해당가구 비목 최빈값 추정치}}{\text{4인가구 비목 평균 지출액}}$$

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표 III-1>에 계산되어 있으며, 분자에 해당되는 값은 <표 III-4>에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환산승수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설명하면, 2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는 2인가구 식료품비 최빈값 추정치 189,436원을 4인가구 식료품비 평균 지출액 391,903원으로 나눈 0.48이 된다.

이와 같이 환산승수 정의에 따라 구한 각 가구·비목별 환산승수의 값은 <표 III-5>에 나타나 있다.

<표 III-4>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432,893	784,738	1,055,535	1,245,284	1,353,985	1,381,638
식료품	103,593	189,436	257,529	307,872	340,465	355,308
주거비	115,433	208,200	278,301	325,736	350,505	352,608
광열·수도	16,121	30,170	42,147	52,052	59,885	65,646
가구·집기	11,403	20,150	26,241	29,676	30,455	28,578
피복·신발	23,702	42,142	55,320	63,236	65,890	63,282
보건·의료	17,500	30,814	39,942	44,884	45,640	42,210
교육·교양	16,082	41,094	75,036	117,908	169,710	230,442
교통·통신	32,056	56,512	73,368	82,624	84,280	78,336
기타 소비	65,939	116,154	150,645	169,412	172,455	159,774

<표 III-5>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0.31	0.56	0.75	0.89	0.96	0.98
식료품	0.26	0.48	0.66	0.79	0.87	0.91
주거비	0.23	0.42	0.57	0.66	0.71	0.72
광열·수도	0.28	0.53	0.73	0.91	1.04	1.14
가구·집기	0.18	0.31	0.41	0.46	0.47	0.45
피복·신발	0.23	0.41	0.54	0.61	0.64	0.61
보건·의료	0.27	0.48	0.62	0.69	0.70	0.65
교육·교양	0.06	0.16	0.30	0.47	0.67	0.92
교통·통신	0.19	0.34	0.44	0.49	0.50	0.47
기타 소비	0.27	0.47	0.61	0.68	0.69	0.64

같은 방법으로 1994년 기준 및 1995년 기준 환상승수를 구할 수 있다. 각년도의 환상승수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에 적용하는 환상승수는 최근 3개년의 환산승수를 평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적용 환산승수(1994년~96년도 3개년 평균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0.31	0.56	0.76	0.91	1.00	1.04
식료품	0.27	0.50	0.68	0.81	0.89	0.93
주거비	0.22	0.41	0.56	0.68	0.75	0.79
광열·수도	0.30	0.55	0.76	0.92	1.02	1.08
가구·집기	0.19	0.33	0.44	0.50	0.52	0.50
피복·신발	0.24	0.43	0.57	0.66	0.69	0.67
보건·의료	0.27	0.48	0.63	0.72	0.76	0.73
교육·교양	0.07	0.17	0.32	0.49	0.70	0.95
교통·통신	0.19	0.33	0.43	0.49	0.52	0.59
기타 소비	0.26	0.46	0.61	0.69	0.73	0.71

나. 1인가구 식료품비<sup>8)</sup>

1) 기본방향

식료품비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식료품비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국민의 식생활 소비형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식료품비의 산정은 소비자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식료품비의 기본은 예전과 같이 중등활동에 종사하는 18세 성인남자 근로자(표준생계비의 기본단위가 18세 단신근로자임)로 하였고, 식료품비 산정을 위한 기본 영양소는 에너지를 이용하였다.

2) 식료품비의 산출방법

[그림 III-1]은 식료품비 산정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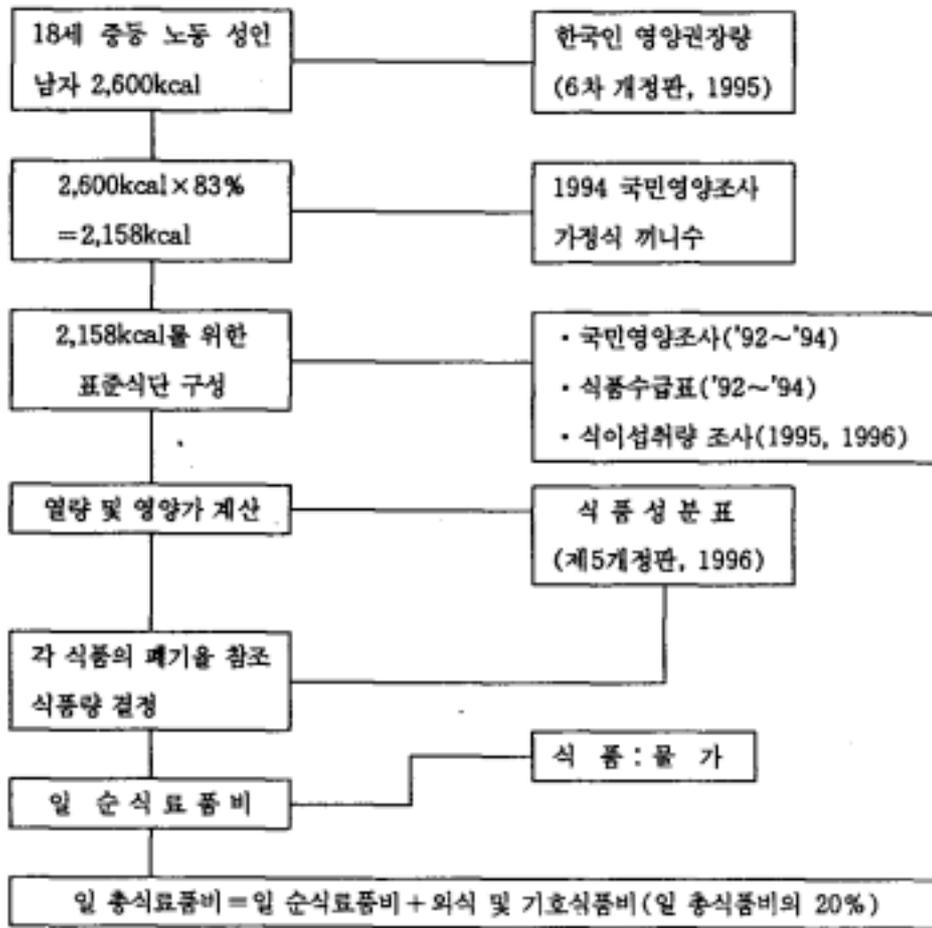
가) 제1단계

우선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18세 남자가 중등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열량 2,600kcal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1994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총식사 중 17% 이상이 가정식이 아닌 식사를 하고 있으므로 권장량의 83%인 2,158kcal를 중심으로 한다. 영양권장량의 개념은 97% 이상의 대상을 만족시키는 에너지량이므로 예전과 같이 따로 여유분을 둘 필요는 없다(표 III-7 참조).

나) 제2단계

2,158kcal를 구성하기 위한 식품종류는 한국영양학회에서 2,600kcal를 기준으로 한 권장량 권장모형을 식품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표 III-8 참조).

[그림 III-1] 식료품비 산정방법



<표 III-7> 국민영양보고서에 의한 총섭취 끼니수 중의 외식빈도 및 비율

(단위 : 회, %)

	1992	1993	1994
총 끼니 수	45,270(100.0)	40,313(100.0)	39,491(100.0)
가정 외 식사횟수	5,750(12.7)	6,468(16.0)	6,743(17.1)
학 교	350(0.8)	466(1.2)	467(1.2)
직 장	1,343(3.0)	1,726(4.3)	1,566(4.0)
매 식	4,057(9.0)	4,276(10.6)	4,710(11.9)

<표 III-8> 식품군별 1인 1일 권장 · 공급 및 섭취량 비교

	1995 영양권장량	1994 식품공급량	1994 국민영양조사	1995* 대도시 성인	1996* 중소도시 성인
곡 류	400~450	477	310	330	324
감 자 류	60~70	33	19	35	18
당 류	12	48	4	6	7
두 류	40	31	34	32	44
종실류, 견과류	—	9	6	12	3
채 소 류	300~350	385	276	264	264
버섯 류			3	5	5
과 일 류	200	96	122	211	172
육 류	120~140	82	56	93	85
어패 류		89	83	80	89
해조 류	—	34	8	5	6
난 류	50	23	20	30	50
유 류	200	90	66	100	50
유지 류	10~15	38	8	10	11
음료 및 주류		202	19	132	70
조미료 류		—	35	31	34
기 타	—	—	1	7	6

주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영양연구부 수행 연구결과임.

- 국민영양조사, 식품수급표, 대도시 지역 성인의 식이섭취량 조사 및 중소도시 지역 성인 남녀의 식이섭취량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식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 각 식품의 선택은 식품수급표에서 가장 공급이 많은 것을 선택하였으며,
  - 국민영양 조사의 경우 섭취량은 기본으로 하였으나, 매년 11월에 조사되어 일부 섭취량의 경우 그 총섭취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수급표의 종류와 양 등을 반영하였다.
  - 식품수급량이나 섭취량이 적더라도 식품류의 양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식품류의 양을 중심으로 비율을 결정하였고,
  - 건강의 측면에서 권장되는 식품은 수급량의 비율보다 초과되게 설정하였다. 또한
  - 식품수급표의 경우 가공식품의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가공식품의 양을 생산통계 등을 참조하여 수록하였다.
  - 식품수급표의 총제공열량은 3년 평균으로 2,911kcal이다. 따라서 2,158kcal은 74.1%에 해당되므로 식품수급량을 74% 정도의 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감안하였다(표 III-9 참조).
  - 국민영양조사의 경우 총섭취열량의 3년 평균이 1,831kcal이므로 이의 117.9%에 해당되는 2,158kcal를 공급하기 위해 섭취량을 참조하였다.
  - 성인의 식사구성 예의 경우, 2,500kcal의 권장모형이므로 권장식품의 양을 13% 정도 감소하여 참조하였으며, 실제 소비형태와 식사구성 예를 비교 · 검토하여 식품의 양을 결정하였다.
  - 각 식품의 양은 소비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 5g단위로 작성하였다.

<표 III-9> 국민 1인당 에너지 공급량과 섭취량

	(단위 : kcal)			
	1992	1993	1994	평균
에너지 공급량 (식품수급표)	2,912	2,872	2,950	2,911
에너지 섭취량 (국민영양조사)	1,875	1,848	1,770	1,831

다) 제3단계

각 식품의 양이 결정된 후 식품성분표의 영양가에 의거하여 영양소별 영양가를 계산한 다음 영양소가 영양권장량에 충분한가를 확인한 후 각 식품의 양을 위의 원칙에 의해 조정하였다. 영양가를 계산한 후 식품분석표에 있는 폐기율을 계산하여 실제 필요한 식품의 총중량, 즉 구입량을 계산하였다.

라) 제4단계

총중량의 가격은 민간자료를 사용하였다. 물가정보사의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연구소의 『유통물가통계』와 한국물가협회의회(물가자료)를 참조하였다. 1991년 이후 『도시가계조사』에서 18세 연령층이 속하는 24세 미만의 외식비 및 기호식품비의 비중을 고려하여 이렇게 계산된 순식품비는 총식품비의 80%로 하며, 나머지 20%는 외식비와 기호식품비로 계산하였다.<sup>9)</sup>

다.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가구 환산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각 비목별 전표본가구의 평균치(=A)와 평균 가구원수를 구한다.

둘째, 1996년 도시가계조사 기준 1인만이 취업한 근로자가구를 표본으로 비식료품관련 비목별로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이 추정된다.

$$Y_i = \hat{a}_i n^2 + \hat{b}_i n \dots\dots\dots (식 5)$$

여기에서 Y=비목값

<표 III-10> 순식료품비를 위한 식료품 명세(1인 18세 근로자, 1일)

식 품 명	가식부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당질 (g)	섬유소 (g)	칼슘 (mg)	철분 (mg)	VA (R.E.)	VB1 (mg)	VB2 (mg)	나이아신 (mg)	VC (mg)	구입량 (g)	'96.12. 기준소비 자 가액	'95.12. 가액
쇠고기(흰우, 등심)	15	33	3.2	2.1	0.0	0.0	1.7	0.4	1.8	0.01	0.03	0.9	0.2	15	268.2	278.4
돼지고기(등심)	30	71	6.3	4.8	0.1	0.0	2.1	0.5	1.5	0.17	0.05	1.7	0.6	30	186	182.8
닭고기(기슴)	10	24	2.0	1.6	0.0	0.0	1.0	0.0	5.1	0.01	0.01	0.7	0.1	13	33	35.6
햄, 소시지(핫도그)	5	14	0.6	1.1	0.3	0.0	0.8	0.1	0.0	0.01	0.00	0.1	0.5	5	35.7	36.7
내장 등(골탕)	5	7	0.5	0.6	0.0	0.0	0.6	0.1	0.8	0.00	0.01	0.1	0.0	5	10.3	9.8
육류	65	149	12.6	10.2	0.4	0.0	6.2	1.1	9.2	0.20	0.10	3.5	1.4		534.2	543.2
물오징어	15	14	2.9	0.2	0.0	0.0	3.8	0.1	0.3	0.01	0.01	0.4	0.0	20	92.6	85.7
조기(생것)	5	8	1.0	0.4	0.0	0.0	2.7	0.1	1.1	0.00	0.01	0.3	0.1	10	37	32
멸치(생것)	15	12	2.6	0.1	0.0	0.0	16.4	0.2	2.6	0.01	0.02	0.3	0.0	39	148.2	234
고등어(생것)	10	18	2.0	1.0	0.0	0.0	2.6	0.2	2.3	0.02	0.05	0.8	0.1	17	116.2	37.4
갈치(생것)	5	7	0.9	0.4	0.0	0.0	2.3	0.1	1.0	0.01	0.01	0.1	0.1	8	73.3	64.5
참다랑어(봉조림)	5	12	1.0	0.8	0.0	0.0	0.3	0.1	0.0	0.00	0.00	0.5	0.0	5	34.2	32.5
건멸치(증)	10	23	3.9	0.5	0.5	0.0	129.0	1.6	0.0	0.01	0.01	0.2	0.0	10	233.3	433.3
어묵(계맛살)	10	11	1.1	0.1	1.5	0.0	21.8	0.1	0.0	0.00	0.01	0.1	0.0	10	66.7	40
어피류	75	95	15.4	3.5	2.0	0.0	178.9	2.5	7.3	0.06	0.12	3.7	0.3		801.7	959.5
달걀	25	40	5.1	2.7	0.2	0.0	9.8	0.5	39.8	0.02	0.11	0.0	0.0	30	85.9	68.1
난류	25	40	5.1	2.7	0.2	0.0	9.8	0.5	39.8	0.02	0.11	0.0	0.0		85.9	68.1
두부	50	40	4.2	1.8	1.5	0.1	79.5	1.3	0.0	0.03	0.02	0.4	0.0	50	27.8	27.8
콩류	10	40	3.6	1.8	2.6	0.5	24.5	0.7	0.0	0.05	0.03	0.2	0.0	10	34.6	35.7
팥(대두달린것 기준)	1	3	0.2	0.0	0.6	0.0	0.8	0.1	0.0	0.01	0.00	0.0	0.0	1	4.7	5.6
두류	61	83	8.0	3.6	4.7	0.6	104.8	2.1	0.0	0.09	0.05	0.6	0.0		67.1	69.1
고추장	5	11	0.3	0.1	2.2	0.1	2.8	0.1	19.5	0.01	0.01	0.1	0.0	5	29	20.1
간장	8	4	0.6	0.0	0.4	0.0	3.1	0.2	0.0	0.00	0.01	0.1	0.0	8	11.6	9.6
된장	8	13	1.1	0.7	0.6	0.3	6.7	0.2	0.0	0.00	0.01	0.1	0.0	8	13.6	9.6
소금	4	0	0.0	0.0	0.0	0.0	1.6	0.0	0.0	0.00	0.00	0.0	0.0	4	2	2
조미료류	25	28	2.0	0.8	3.2	0.4	14.2	0.5	19.5	0.01	0.03	0.3	0.0		56.2	41.3
계(흰계, 묽은것)	3	17	0.8	1.6	0.5	0.2	34.5	0.3	0.0	0.02	0.01	0.2	0.0	3	44.7	47.1
팜	2	3	0.1	0.0	0.7	0.0	0.6	0.0	0.2	0.01	0.00	0.0	0.2	3	9.3	8.1
땅콩(볶은것)	2	11	0.5	1.0	0.4	0.1	1.0	0.1	0.0	0.01	0.00	0.3	0.0	2	9.6	8.7
콩싹류 및 견과류	7	31	1.2	2.6	1.6	0.3	36.1	0.4	0.2	0.04	0.01	0.5	0.2		63.6	63.8
소 계	258	426	42.3	23.4	13.1	1.3	350.0	7.1	76.0	0.42	0.42	8.6	1.9		1,608.7	1,745

고기·생선·계란·콩류

식품명	가식부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당질 (g)	섬유소 (g)	칼슘 (mg)	철분 (mg)	VA (R.E.)	VB1 (mg)	VB2 (mg)	나이아신 (mg)	VC (mg)	구입량 (g)	'96.12.	'95.12.
															기준소비 자 가려	가려
배추김치	80	14	1.6	0.4	2.1	1.0	37.6	0.6	38.4	0.05	0.05	0.6	11.2	80	288	320
박두기	30	10	0.5	0.1	2.0	0.2	11.1	0.1	11.4	0.04	0.02	0.2	5.7	30	130	120
동나물	30	10	1.6	0.4	0.8	0.2	7.8	0.2	0.0	0.04	0.03	0.2	3.9	30	33.6	28.8
양파	25	9	0.3	0.0	2.0	0.1	4.0	0.1	0.0	0.01	0.01	0.0	2.0	28	30.2	16.2
호박(패지호박)	10	3	0.1	0.0	0.7	0.0	6.1	0.2	14.0	0.01	0.01	0.1	4.0	10	24	15.2
파(대파)	15	4	0.2	0.0	0.8	0.2	12.2	0.2	19.4	0.01	0.01	0.1	3.2	19	25.8	19
오이	10	1	0.1	0.0	0.2	0.1	2.4	0.0	2.1	0.01	0.00	0.0	1.1	11	39.6	29.3
상치	5	1	0.1	0.0	0.2	0.0	2.8	0.0	18.3	0.00	0.00	0.0	1.0	5	14.5	8.9
당근	10	3	0.1	0.0	0.8	0.1	4.0	0.1	127.0	0.01	0.01	0.1	0.8	12	16.3	17.7
시금치	15	4	0.4	0.1	0.7	0.1	6.5	0.4	71.6	0.02	0.04	0.2	9.9	18	46.8	27.9
꽃고추(개량종)	10	2	0.2	0.0	0.4	0.3	1.3	0.1	5.2	0.01	0.01	0.1	7.2	11	39.7	33
마늘	10	12	0.9	0.0	2.4	0.1	1.4	0.1	0.1	0.02	0.01	0.1	0.9	12	48	47.3
양배추	5	2	0.1	0.0	0.4	0.0	1.9	0.0	0.2	0.00	0.00	0.0	1.5	6	4.4	5.22
배추	10	1	0.1	0.0	0.2	0.1	5.1	0.0	0.9	0.01	0.01	0.0	4.6	11	5.95	4.9
무우청	15	3	0.3	0.0	0.5	0.2	37.4	0.5	55.2	0.01	0.02	0.1	11.3	19	25.3	24
무우	20	4	0.2	0.0	0.8	0.1	5.2	0.1	1.6	0.01	0.00	0.1	3.0	21	10.4	6.3
채소류	300	83	6.8	1.0	15.0	2.8	146.8	2.7	365.4	0.26	0.23	1.9	71.3		782.6	723.8
감자	35	28	0.5	0.1	6.5	0.2	1.1	0.6	0.0	0.06	0.01	0.4	6.3	38	50.9	55.5
고구마	15	19	0.2	0.0	4.5	0.1	3.6	0.1	2.9	0.01	0.01	0.1	3.8	17	28.6	7.0
서유	50	47	0.7	0.1	11.0	0.3	4.7	0.7	2.9	0.07	0.02	0.5	10.1		79.5	62.5
느타리버섯	3	1	0.1	0.0	0.1	0.0	0.1	0.0	0.0	0.01	0.01	0.2	0.1	3	24	24
표고버섯(건)	1	3	0.2	0.0	0.6	0.1	0.2	0.0	0.0	0.00	0.02	0.2	0.0	1	6.7	10.67
양송이버섯(생것)	1	0	0.0	0.0	0.0	0.0	0.1	0.0	0.0	0.00	0.01	0.0	0.0	1	18.7	9.3
버섯류	5	4	0.3	0.0	0.7	0.0	0.4	0.0	0.0	0.01	0.04	0.4	0.1		49.4	44
미역(건)	5	10	1.0	0.1	0.2	0.0	48.0	0.5	27.8	0.01	0.05	0.2	0.9	5	75	73
다시마(건)	1	2	0.1	0.0	0.4	0.0	7.1	0.1	1.0	0.00	0.00	0.0	0.2	1	4.8	4.6
김	4	10	1.5	0.1	1.5	0.1	13.0	0.7	150.0	0.05	0.12	0.4	3.7	4	59.8	88
해조류	10	22	2.6	0.2	2.1	0.1	68.1	1.3	178.8	0.06	0.17	0.6	4.8		139.6	165.3
사과(후지)	45	26	0.1	0.0	6.9	0.2	1.4	0.1	1.4	0.00	0.00	0.0	1.8	55	132	44
배	5	2	0.0	0.0	0.6	0.0	0.2	0.0	0.0	0.00	0.00	0.0	0.2	7	27.7	10.9
감	5	2	0.0	0.0	0.6	0.1	0.4	0.0	1.2	0.00	0.00	0.0	2.5	7	17.5	9.7
포도(캘벨)	5	3	0.0	0.0	0.8	0.0	0.2	0.0	0.0	0.00	0.00	0.0	0.4	8	36	80

채소 및 과일류

복숭아	5	2	0.0	0.0	0.4	0.0	0.2	0.0	0.1	0.00	0.00	0.0	0.4	6	12	13.6
딸	30	14	0.2	0.1	3.5	0.1	5.4	0.1	2.4	0.03	0.02	0.2	11.7	40	60	42
수박	40	12	0.3	0.0	3.1	0.0	2.4	0.1	11.2	0.02	0.01	0.1	2.4	64	104	30.7
참외	5	2	0.1	0.0	0.4	0.0	0.3	0.0	0.0	0.00	0.00	0.1	1.1	7	22.5	21.9
과일류	140	73	0.7	0.1	16.3	0.4	10.5	0.3	16.3	0.05	0.03	0.4	20.5		411.7	252.8
소 계	505	229	10.1	1.2	45.1	3.6	230.5	5.0	563.4	0.45	0.49	3.8	106.8		1,462.8	1,248.4
쌀	300	1,044	19.5	3.3	228.6	0.6	15.0	1.5	0.0	0.42	0.06	3.9	0.0	300	542.3	502.5
보리	5	17	0.5	0.1	3.8	0.0	1.9	0.1	0.0	0.01	0.00	0.2	0.0	5	5.9	5.2
빵류(식량 기준)	15	42	1.4	0.9	7.0	0.0	4.2	0.1	0.3	0.01	0.01	0.2	0.0	15	27.6	18.8
국수	20	74	2.3	0.1	14.9	0.1	7.8	0.4	0.0	0.03	0.06	0.3	0.0	20	31.2	26
라면	10	38	0.9	1.4	6.1	0.1	1.6	0.1	0.7	0.06	0.04	0.1	0.0	10	25	25
밀가루	5	18	0.5	0.1	3.7	0.0	0.6	0.1	0.0	0.01	0.00	0.1	0.0	5	2.3	2.3
현미	5	18	0.3	0.1	3.8	0.2	0.1	0.2	0.0	0.02	0.00	0.1	0.0	5	17	16.2
소 계	360	1,251	25.4	6.0	267.9	1.0	31.2	2.5	1.0	0.56	0.17	4.9	0.0		651.3	595.3
우유	160	96	5.1	5.1	7.5	0.0	168.0	0.2	44.8	0.06	0.22	0.2	1.6	150	253.5	205.4
액상요구르트	30	16	0.2	0.3	2.9	0.0	3.6	0.1	0.0	0.24	0.02	0.1	4.5	30	44.3	42.1
아이스크림	5	11	0.2	0.7	1.0	0.0	6.1	0.0	7.6	0.00	0.01	0.0	0.0		14	13.3
소 계	195	123	5.5	6.1	11.4	0.1	177.7	0.3	52.4	0.30	0.25	0.3	6.1		311.8	260.8
콩가루	5	44	0.0	5.0	0.0	0.0	0.0	0.0	0.0	0.00	0.00	0.0	0.0	5	8.5	8.9
참깨	2	18	0.0	2.0	0.0	0.0	0.0	0.0	0.0	0.00	0.00	0.0	0.0	2	50.7	48
옥수수가루	2	18	0.0	2.0	0.0	0.0	0.0	0.0	0.0	0.00	0.00	0.0	0.0	2	4.2	4.2
유제품	9	80	0.0	9.0	0.0	0.0	0.0	0.0	0.0	0.00	0.00	0.0	0.0		63.4	61.1
설탕	5	19	0.0	0.0	5.0	0.0	0.2	0.0	0.0	0.00	0.00	0.0	0.0	5	4	3.7
탄산음료(콜라)	90	36	0.0	0.0	9.0	0.0	1.8	0.0	0.0	0.00	0.00	0.0	0.0	90	88.7	88.7
당류	95	55	0.0	0.0	14.0	0.0	2.0	0.0	0.0	0.00	0.00	0.0	0.0		92.7	92.3
소 계	104	135	0.0	1.0	14.0	0.0	2.0	0.0	0.0	0.00	0.00	0.0	0.0		1,119.2	1,010.1
총 계	1,422	2,164	83.3	45.7	361.5	5.9	791.4	14.9	692.8	1.73	1.33	17.6	114.8		4,190.8	4,003.6
영양권장량(83%)		2,158	66.4				747.4	14.9	581.0	1.16	1.33	14.9	45.7			
비율		100.3	125.5	(19.1)			105.9	100.0	119.2	149.1	100.0	118.1	25.12			

주: 1) 소비자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의 평균임.

2) 콩류, 쌀, 고추장, 설탕, 탄산음료 등은 한국물가정보사의 『종합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의 『물가지료』, 한국농용통계연구원의 『유물물가통계』를 참조하였음.

3) 내장 등 곱창, 태추김치, 짬두기, 현미, 무우청, 유제품(요구르트) 등은 어떤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아 1996년도 10~11월 사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한 평균값으로 대체하였음.

n=가구원수

i=해당비목

비목별 (식 5)의 추정결과는 <표 III-11>에 수록되어 있다.

셋째, <표 III-11>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가구원수(=X)가 4인인 경우의 비목값(=Y<sub>a</sub>)과 평균 가구원수인 경우의 비목값(=Y<sub>b</sub>)을 구하여 B=Y<sub>a</sub>÷Y<sub>b</sub>를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각 비목별로 A×B, 즉 전표본가구 평균치에 B를 곱한 값이 4인 환산치로 정의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비식료품비관련 4인 환산치가 <표 III-12>에 수록되어 있다.

<표 III-11>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sup>10)</sup>

	a	b	R <sup>2</sup>
소비지출	-40,524	473,417	0.93
식료품	-8,875	112,468	0.87
주거비	-11,333	126,766	0.67
광열·수도	-1,036	17,157	0.65
가구·집기	-1,328	12,731	0.21
피복·신발	-2,631	26,333	0.41
보건·의료	-2,093	19,593	0.24
교육·교양	4,465	11,617	0.49
교통·통신	-3,800	35,856	0.55
기타 소비	-7,862	73,801	0.65

<표 III-12>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전체가구평균치 (A)	4인가구 추정치 (Y <sub>4</sub> )	평균가구원수 가구 추정치(Y <sub>4</sub> )	4인가구환산치 (A×Y <sub>4</sub> ÷Y <sub>4</sub> )
주거비	436,881	325,736	305,553	465,739
광열·수도	54,165	52,052	47,478	59,383
가구·집기	61,556	29,676	28,351	64,432
피복·신발	92,758	63,236	60,068	97,651
보건·의료	62,491	44,884	43,028	65,187
교육·교양	194,173	117,908	95,695	239,245
교통·통신	153,494	82,624	79,115	160,303
기타 소비	242,350	169,412	162,339	252,909

라. 가구별 소비지출

이제 소비지출액을 가구별로 산출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거비에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통계적 설명력도 높고 현실에도 적합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한 것만 산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지출액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비소비지출액 역시 같은 기준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식료품비

앞에서 구한 1인가구 식료품비를 토대로 하여 j가구 식료품비는

$$1\text{인가구 식료품비} \times 30.4 \times \frac{10}{8} \times \frac{j\text{가구 식료품비 적용환산승수}}{1\text{인가구 식료품비 적용환산승수}}$$

.....(식 6)

에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1인가구 식료품비는 2,600kcal의 80%를 환산한 가격을 의미하며 30.4는 한달 평균일수(365/12), 10/8은 외식비의 비중을 20%를 고려하기 위한 수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가구별 식료품비가 <표 III-13>의 식료품비값이다.

<표 III-13> 가구별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433,918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식료품	147,400	272,122	374,168	447,868	493,222
주거비	102,463	190,953	260,814	316,703	349,304
광열·수도	17,815	32,661	45,131	54,632	60,570
가구·집기	12,242	21,263	28,350	32,216	33,505
피복·신발	23,436	41,990	55,661	64,450	67,379
보건·의료	17,601	29,986	49,953	46,935	49,542
교육·교양	16,747	40,672	76,558	117,230	167,471
교통·통신	30,458	52,900	68,930	78,548	83,358
기타 소비	65,756	116,338	154,274	174,507	184,624
엔젤 계 수	34.0	34.1	33.6	33.6	33.1

2) 비식료품비

비식료품관련 i비목 · j가구의 값은 4인가구 환산치에 i비목 · j가구 적용 환산승수를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표 III-13>에 비식료품관련 가구 · 비목별 값이 수록되어 있다.

주석 1) 노총 · 경총 · 관계학자를 포함한 1차 간담회에서 연간자료 사용을 제안하였다(1995년 12월).

주석 2) 이용가능한 최근자료가 1996년 3/4분기까지이다.

주석 3)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할 경우 월세를 사는 가구의 주거비가 전세 또는 자가일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석 4) 이는 최빈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의 분포가 log 정규분포 형태를 지닌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주석 5) 이러한 최빈값 계층 구간이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형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m \pm \frac{1}{2}\sigma$  는 대체로 1,000가구 이상을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의 경우 이러한 최빈값 계층은 2인가구 205가구, 3인가구 385가구, 4인가구 538가구, 5인가구 142가구로 총 1,270가구이다.

주석 6) 회귀방정식을  $Y=an+b+e$ 라는 1차식에 의해 추정할 수도 있으나 가구원수가 0이면 소비지출도 0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액은 증가하나 그 증가속도는 체감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2차식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1차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 소비지출액이 負(-)의 부호를 갖는 경우가 나타났고  $R^2$ 도 상당히 낮았다. 한편 상수항을 넣은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R^2$ 값이 낮아 상수항을 넣지 않았다.

주석 7) 가구는 2인부터 6인가구까지만 사용. 7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각 비목별 평균값이 들쭉날쭉하여 회귀분석시 계수값이 실제치와 다르게 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결정되었다(표 III-1 참조).

주석 8) 1인가구 식료품비의 열량 및 식품구성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김초일 박사가 산정하였다.

주석 9) 식품연구원 및 보사연, 보사부 등에서는 전체 식품비 중 40%가 외식으로 조사되었다. 외식비용 40%로 하면 식품비가 너무 높다. 실제 연구에서는 최빈계층이므로 20%만 계상하였다.

주석 10) <표 III-3>과 같은 것인데, 편의상 다시 수록했다.

## 2. 비소비지출<sup>1)</sup>

비소비지출은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비소비지출 금액은 1988년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법령상 실부담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에 예전과 같이 이에 따랐다.

### 가. 조세

1990년 12월 31일부로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조세는 소득세, 주민세로만 구성된다.

#### 1) 소득세

소득세는 이전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적인 근로소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총액을 평균 저축률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하였다.<sup>2)</sup>

<표 III-14> 1996년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	—
4,000만원 이하	20	100
8,000만원 이하	30	500
8,000만원 초과	40	1,000

주 : 1996년 세법 개정에 의거.  
자료 : 국세청, 「간이소득세액표」, 1996.

#### 2) 주민세

소득세와 동일규정에 의해 소득세에 7.5%를 곱한 금액이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구별 조세액이 <표 III-15>에 수록되어 있다.

<표 III-15> 가구별 표준생계비의 조세액 및 사회보장분담금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433,918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추정근로소득	542,397	998,607	1,392,299	1,666,361	1,861,218
조세및사회보장 분담금계	17,467	45,939	70,325	86,572	100,743
조세액	0	12,320	25,316	32,293	38,840
소득세	0	11,460	23,550	30,040	36,130
주민세	0	860	1,766	2,253	2,710
사회보장분담금	17,467	33,620	45,009	54,279	61,904
의료보험	6,840	13,224	17,632	21,280	24,320
국민연금	9,000	17,400	23,200	28,000	32,000
고용보험	1,627	2,996	4,177	4,999	5,584

나. 사회보장분담금

사회보장분담금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으로 구성된다.

1) 의료보험

의료보험료는 해당 표준보수월액(추정근로소득×0.85)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 의료보험 등급표에서 구하였다.

해당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본인부담비율 ……………(식 7)

로 계산된다. 해당 표준보수월액은 <표 III-16>에 수록되어 있다. 직장피보험자의 부담액은 의료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험액의 50%를 개인별 부담으로 하였다. 보험료율은 조합 정관에 따라 지역·지구별로 달라지는데 본고는 1996년 12월말 현재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 평균 보험료율 3.04%를 기준으로 하였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라 해당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을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국민연금 부담액은

해당 표준보수월액 × 20/1000 ……………(식 8)

로 정의된다.

3) 고용보험

임금총액(추정근로소득)×3/1000 ……………(식 9)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구별 사회보장분담금이 <표 III-15>에 수록되어 있다.

<표 III-16> 표준보수월액 조건표

동 급	보 수 월 액	표준보수월액
1	75,000 미만	70,000
2	75,000 이상 85,000 미만	80,000
3	85,000 이상 95,000 미만	90,000
4	95,000 이상 105,000 미만	100,000
5	105,000 이상 115,000 미만	110,000
6	115,000 이상 125,000 미만	120,000
7	125,000 이상 135,000 미만	130,000
8	135,000 이상 145,000 미만	140,000
9	145,000 이상 155,000 미만	150,000
10	155,000 이상 165,000 미만	160,000
11	165,000 이상 175,000 미만	170,000
12	175,000 이상 185,000 미만	180,000
13	185,000 이상 195,000 미만	190,000
14	195,000 이상 205,000 미만	200,000
15	205,000 이상 215,000 미만	210,000
16	215,000 이상 225,000 미만	220,000
17	225,000 이상 235,000 미만	230,000
18	235,000 이상 245,000 미만	240,000
19	245,000 이상 260,000 미만	260,000
20	255,000 이상 280,000 미만	270,000
21	280,000 이상 300,000 미만	290,000
22	300,000 이상 320,000 미만	310,000
23	320,000 이상 340,000 미만	330,000
24	340,000 이상 360,000 미만	350,000
25	360,000 이상 380,000 미만	370,000
26	380,000 이상 400,000 미만	390,000
27	400,000 이상 420,000 미만	410,000
28	420,000 이상 440,000 미만	430,000
29	440,000 이상 465,000 미만	450,000
30	465,000 이상 495,000 미만	480,000
31	495,000 이상 525,000 미만	510,000
32	525,000 이상 555,000 미만	540,000
33	555,000 이상 585,000 미만	570,000
34	585,000 이상 615,000 미만	600,000
35	615,000 이상 645,000 미만	630,000
36	645,000 이상 675,000 미만	660,000
37	675,000 이상 705,000 미만	690,000
38	705,000 이상 745,000 미만	720,000
39	745,000 이상 795,000 미만	770,000
40	795,000 이상 845,000 미만	820,000
41	845,000 이상 895,000 미만	870,000
42	895,000 이상 945,000 미만	920,000
43	945,000 이상 995,000 미만	970,000
44	995,000 이상 1,055,000 미만	1,020,000
45	1,055,000 이상 1,125,000 미만	1,090,000
46	1,125,000 이상 1,195,000 미만	1,160,000
47	1,195,000 이상 1,265,000 미만	1,230,000
48	1,265,000 이상 1,350,000 미만	1,300,000
49	1,350,000 이상 1,450,000 미만	1,400,000
50	1,450,000 이상 1,550,000 미만	1,500,000
51	1,550,000 이상 1,700,000 미만	1,600,000
52	1,700,000 이상 1,900,000 미만	1,800,000
53	1,900,000 이상	1,900,000

자료 : 의료보험 업무편람, 「표준보수월액 조건표(시행령 제81조)」, 1996.  
 국민연금 실무편람,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1996.

다. 기타 비소비지출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기타 비소비(오물세)는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되게 되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에서는 가정집 1인당 평균 쓰레기량을 1.5리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 환경청에서 하루 총쓰레기량을 평균적으로 0.4kg으로 잡고 이를 무게/부피의 값인 0.27로 나눌 때 1.5리터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5리터를 각 가구인수와 이와 상응하는 쓰레기봉투 값을 곱할 때 각 가구당 오물세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17> 오물세

	1인(1.5리터)	2인(3리터)	3인(4.5리터)	4인(6리터)	5인(7.5리터)
오물세	589.5원	1,179원	1,768원	2,358원	2,948원

주 : 각 가구당 오물세비는 하루 평균 1.5리터×30일×13.1원(10리터 기준 1리터 당 평균가격)

라. 가구별 비소비지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법령상 실제 부담액으로 산정된 가구별 비소비지출액이 <표 III-18>에 나타나 있다. 최저임금 수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가구의 경우 비소비지출 총액은 18,057원이다.

<표 III-18> 가구별 표준생계비의 비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 비 지 출	433,918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추정근로소득	542,397	998,607	1,392,299	1,666,361	1,861,218
조세및사회보장	17,467	45,939	70,325	86,572	100,743
비 소비 지 출	18,057	47,118	72,093	88,930	103,691
조 세 액	0	12,320	25,316	32,293	38,840
소 득 세	0	11,460	23,550	2,253	36,130
주 민 세	0	860	1,766	32,293	2,710
사회보장분담금	17,467	33,620	45,009	54,279	61,904
의 료 보 험	6,840	13,224	17,632	21,280	24,320
국 민 연 금	9,000	17,400	23,200	28,000	32,000
고 용 보 험 료	1,627	2,996	4,177	4,999	5,584
기 타 비 소비	590	1,179	1,768	2,358	2,948

주석 1) 저축에 관한 사항

- 저축액은 표준생계비에 넣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최심위에서의 그동안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 그러나 비소비지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고용보험비) 계산시에 표준근로소득 추정시 저축률이 필요하므로 저축률을 20%로 계산하였다.
- 기존 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20%로 추정하여 계산해 왔다.
- 저축추진중앙회에서는 소득의 35%이다.
- 도시가계상의 저축자료는 값이 너무 높다-소비지출계의 50%이상

수준이다(도시가계회귀분석에 의한 1인가구 추정값 20만원).

주석 2)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저축률은 1993년 34.9%, 1994년 35%(잠정)로 나타나 표준생계비 산출대상이 되는 최빈값 계층, 특히 18세 단신근로자 가구의 경우 저축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기에 20%로 가정하여 환산하였다.

## IV. 最近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 1. 본 연구에서의 개선점

본 연구는 작년도 같은 연구(정인수, 1995 참조)에서 사용한 방법을 주로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새로이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분기별 자료(2/4분기)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평균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최빈계층의 계산시 분산의 자유도를 고려함으로써 노사합의에 따른 정확한 최빈계층 구간을 사용하였다.

셋째, 환산승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 2. 1인가구 18세에 대한 연령조정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1987년 9월에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산정대상이 되는 표준가구는 다음과 같다고 명시되고 있다(그림 IV-1 참조). 이는

[그림 IV-1]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구성 (표준가구)	1인 : 독신취업자(18세 정도)
	2인 : 부부(1인 취업)
	3인 : 부부와 자녀 1인(1인 취업)
	4인 : 부부와 자녀 2인(1인 취업)
	5인 : 부부와 자녀 3인(1인 취업)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 8쪽.

<표 IV-1> 가구원수별 평균 연령

	1인	2인	3인	4인	5인
연령범위	18	28.2~29.4	29.4~31.7	31.7~33.9	33.9~47.4
평균연령	18	28.8	30.6	32.8	40.7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 29쪽.

최심위가 발족한 1987년의 초창기 내용으로 노·사 모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가구원수별 평균 연령도 2인 이상은 28.8~40.7세로 되어 있으나 1인가구는 18세로 정해져 있다(표 IV-1 참조).

1인가구는 18세 단신근로자로 대표되므로 1인가구는 여타 2인 이상 가구와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만큼 '최임심 생계비' 계산시 연령 및 단신이라는 요소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방법을 다시 생각하여 볼 때, 1인가구에 대한 도시가계조사자료가 원래 통계조사되지

않음으로써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가구원수를 대상(독립변수)으로 회귀분석하여 1인가구에 대한 추정값을 계산해 내는 관계상 추정된 1인가구 생계비에는 2인 이상 가구의 특성 - 혼인, 연령 -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유추된다. 그럴 경우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연령이 그대로 1인가구에도 반영되고, 2인 이상 가구에서 대부분 혼인한 가구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1인가구 생계비가 계산되어 나온다.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1인가구 18세 단신근로자 가구의 생계비와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조정한 값을 만들어야만 목표에 부합한 값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가 연구 및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귀분석시 가구원수만을 독립변수로서 사용하지 말고 연령 및 혼인 여부도 더미(dummy)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는 자료상의 한계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즉 연령의 구분은 통계청 자료에 있으나 결혼 유무에 대한 변수는 통계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연구에서 연령조정만 한다면 실제적으로 결혼연령이 25세 이상인 현실을 함께 조정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체평균 소비액을 단신 연령그룹인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액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방법에 착안, 조정하였다. 연령조정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체평균 소비액과 18~24세 연령그룹의 비율은 0.8임. 따라서 0.8을 조정치로 사용함.

· 최빈계층 소비지출, 18~24세/전체연령 평균은 1994~96년 3개년 평균한 값이 정확히 0.8이 나온다.

### 3.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우선 1996년도의 경우 <표 III-13>의 소비지출과 <표 III-18>의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구별 생계비가 <표 IV-2>에 수록되어 있다. 이 표에서 1인가구에 대한 최임심 생계비값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의 첫 번째 세로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조정을 안한 수치이며 두 번째 세로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조정을 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생계비를 두 번째 세로줄에 나타나는 연령조정을 한 값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최임심을 위한 본 연구원의 공식적 1인가구생계비 액수는 36만4천8백66원이 된다. 이는 전년도에 제시한 33만8천2백17원보다는 7.9% 상승한 값이며, 본 연구에서 작년도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1995년 자료에 의한 1년전 대비로는 8.1% 상승한 값이다.

1인가구 생계비에 식료품의 경우에도 연령조정을 하는데 대하여 한국노총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식료품은 연령조정을 안한 경우의 값보다 식료품을 연령조정된 것을 택하는 이유는 전체소비에서 연령조정(0.8)값만 알 수 있으므로 식료품에는 조정하지 않을 경우 과대계산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 18세 단신근로자가 식비가 많이 든다면 다른 비목에서 소비를 더 줄이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그렇게 하였다. 이 연령조정값에 대한 논쟁은 기존의 연구방법이 계속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가 이론생계비이기 때문에 실태생계비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론에 대한 반대이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18세 단신근로자의 식료품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된다.

<표 IV-2> 가구원수별 생계비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433,918	347,134	798,885	1,113,839	1,333,089	1,488,975
식료품	147,400	117,920	272,122	374,168	447,868	493,222
주거비	102,463	81,970	190,953	260,814	316,703	349,304
광열·수도	17,815	14,252	32,661	45,131	54,632	60,570
가구·집기	12,242	9,794	21,263	28,350	32,216	33,505
피복·신발	23,436	18,749	41,990	55,661	64,450	67,379
보건·의료	17,601	14,081	29,986	49,953	46,935	49,542
교육·교양	16,747	13,398	40,672	76,558	117,230	167,471
교통·통신	30,458	24,366	52,900	68,930	78,548	83,358
기타 소비	65,756	52,605	116,338	154,274	174,507	184,624
비소비지출	18,057	17,732	47,118	72,093	88,930	103,691
조세액	0	0	12,320	25,316	32,293	38,840
사회보장	17,467	17,142	33,620	45,009	54,279	61,904
기타 비소비	590	590	1,179	1,768	2,358	2,948
표준생계비	451,975	364,866	846,004	1,185,932	1,422,019	1,592,666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 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표 IV-3> 전년대비 상승률

(단위 : %)

	1인	1인*	4인
'96.9. ~ '97.8. 1인가구 표준생계비 (423,610원)	6.7	7.9	-
같은 방법 전년대비	8.2	8.1	7.1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 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 4. 생계비 추정에 대한 과제

본장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비의 연령그룹별 조정의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장에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외식비의 경우 식료품비 중 몇 %를 외식비로 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20%로 하였다. 이 점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치나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저축을 생계비에 반영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최저생계비에 저축을 넣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합리적인 결정인가 하는 점과 다음으로 만약 포함시킨다면 몇 % 정도가 소비지출 중 저축액인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가의 점에서 그렇다.

<參考資料>

참고1 소비지출에 대한 누적분포

<참고표 1> 소비지출에 대한 누적분포표<sup>1)</sup>(1,000분위)

1,000분위 (0.001~1.000)	도 수	도 수 (%)	누적도수	누적 (%)
0.001	18,419	53.8	18,419	53.8
0.002	4	0.0	18,423	53.8
0.003	5	0.0	18,428	53.8
0.004	19	0.1	18,447	53.9
0.005	28	0.1	18,475	54.0
0.006	42	0.1	18,517	54.1
0.007	56	0.2	18,573	54.2
0.008	77	0.2	18,650	54.5
0.009	117	0.3	18,767	54.8
0.010	136	0.4	18,903	55.2
0.011	166	0.5	19,069	55.7
0.012	158	0.5	19,227	56.2
0.013	204	0.6	19,431	56.7
0.014	185	0.5	19,616	57.3
0.015	390	1.1	20,006	58.4
0.016	362	1.1	20,368	59.5
0.017	384	1.1	20,752	60.6
0.018	298	0.9	21,050	61.5

1) (최고치 - 최저치)를 1,000분위하여 누적분포를 살펴볼 것이다. 결과 0.001분위에 54%의 누적도수가 나타나고 0.052분위까지 90%의 누적도수가 존재하여 전형적인 log-normal 분포를 보인다. 최고치 22,744,790원 최저치 86,350원이다.

1,000분위 (0.001~1.000)	도 수	도 수 (%)	누적도수	누적 (%)
0.019	440	1.3	21,490	62.8
0.020	302	0.9	21,792	63.6
0.021	372	1.1	22,164	64.7
0.022	375	1.1	22,539	65.8
0.023	379	1.1	22,918	66.9
0.024	374	1.1	23,292	68.0
0.025	363	1.1	23,655	69.1
0.026	337	1.0	23,992	70.1
0.027	350	1.0	24,342	71.1
0.028	389	1.1	24,731	72.2
0.029	418	1.2	25,149	73.4
0.030	604	1.8	25,753	75.2
0.031	352	1.0	26,105	76.2
0.032	324	0.9	26,429	77.2
0.033	297	0.9	26,726	78.1
0.034	333	1.0	27,059	79.0
0.035	281	0.8	27,340	79.8
0.036	325	0.9	27,665	80.8
0.037	371	1.1	28,036	81.9
0.038	254	0.7	28,290	82.6
0.039	231	0.7	28,521	83.3
0.040	206	0.6	28,727	83.9
0.041	292	0.9	29,019	84.8
0.042	191	0.6	29,210	85.3
0.043	237	0.7	29,447	86.0
0.044	171	0.5	29,618	86.5
0.045	153	0.4	29,771	86.9
0.046	198	0.6	29,969	87.5
0.047	167	0.5	30,136	88.0
0.048	146	0.4	30,282	88.4
0.049	208	0.6	30,490	89.0
0.050	156	0.5	30,646	89.5

1,000분위 (0.001~1.000)	도 수	도 수 (%)	누적도수	누적 (%)
0.051	124	0.4	30,770	89.9
0.052	111	0.3	30,881	90.2
0.053	159	0.5	31,040	90.7
0.054	83	0.2	31,123	90.9
0.055	134	0.4	31,257	91.3
0.056	76	0.2	31,333	91.5
0.057	188	0.5	31,521	92.1
0.058	151	0.4	31,672	92.5
0.059	76	0.2	31,748	92.7
0.060	163	0.5	31,911	93.2
0.061	186	0.5	32,097	93.7
0.062	55	0.2	32,152	93.9
0.063	50	0.1	32,202	94.0
0.064	103	0.3	32,305	94.3
0.065	79	0.2	32,384	94.6
0.066	65	0.2	32,449	94.8
0.067	44	0.1	32,493	94.9
0.068	66	0.2	32,559	95.1
0.069	70	0.2	32,629	95.3
0.070	60	0.2	32,689	95.5
0.071	42	0.1	32,731	95.6
0.072	52	0.2	32,783	95.7
0.073	36	0.1	32,819	95.8
0.074	80	0.2	32,899	96.1
0.075	68	0.2	32,967	96.3
0.076	39	0.1	33,006	96.4
0.077	29	0.1	33,035	96.5
0.078	20	0.1	33,055	96.5
0.079	22	0.1	33,077	96.6
0.080	57	0.2	33,134	96.8
0.081	51	0.1	33,185	96.9
0.082	18	0.1	33,203	97.0

1,000분위 (0.001~1.000)	도 수	도 수 (%)	누적도수	누적 (%)
0.083	31	0.1	33,234	97.1
0.084	22	0.1	33,256	97.1
0.085	103	0.3	33,359	97.4
0.086	20	0.1	33,379	97.5
0.087	23	0.1	33,402	97.6
0.088	15	0.0	33,417	97.6
0.089	22	0.1	33,439	97.7
0.090	75	0.2	33,514	97.9
0.091	21	0.1	33,535	97.9
0.092	13	0.0	33,548	98.0
0.093	12	0.0	33,560	98.0
0.094	6	0.0	33,566	98.0
0.095	12	0.0	33,578	98.1
0.096	28	0.1	33,606	98.1
0.097	12	0.0	33,618	98.2
0.098	22	0.1	33,640	98.2
0.099	8	0.0	33,648	98.3
0.100	14	0.0	33,662	98.3
0.110	106	0.3	33,768	98.6
0.120	70	0.2	33,838	98.8
0.130	59	0.2	33,897	99.0
0.140	42	0.1	33,939	99.1
0.150	42	0.1	33,981	99.2
0.160	24	0.1	34,005	99.3
0.170	15	0.0	34,020	99.4
0.180	12	0.0	34,032	99.4
0.190	5	0.0	34,037	99.4
0.200	13	0.0	34,050	99.4
0.210	6	0.0	34,056	99.5
0.220	8	0.0	34,064	99.5
0.230	2	0.0	34,066	99.5
0.240	3	0.0	34,069	99.5

1000분위 (0.001~1.000)	도 수	도 수 (%)	누적도수	누적 (%)
0.250	2	0.0	34,071	99.5
0.260	3	0.0	34,074	99.5
0.280	4	0.0	34,078	99.5
0.290	4	0.0	34,082	99.5
0.300	22	0.1	34,104	99.6
0.310	1	0.0	34,105	99.6
0.320	5	0.0	34,110	99.6
0.330	1	0.0	34,111	99.6
0.340	41	0.1	34,152	99.7
0.350	3	0.0	34,155	99.8
0.380	1	0.0	34,156	99.8
0.390	1	0.0	34,157	99.8
0.400	2	0.0	34,159	99.8
0.420	2	0.0	34,161	99.8
0.430	9	0.0	34,170	99.8
0.440	2	0.0	34,172	99.8
0.450	7	0.0	34,179	99.8
0.460	1	0.0	34,180	99.8
0.490	2	0.0	34,182	99.8
0.500	29	0.1	34,211	99.9
0.520	1	0.0	34,212	99.9
0.530	1	0.0	34,213	99.9
0.550	11	0.0	34,224	100.0
0.600	1	0.0	34,225	100.0
0.670	2	0.0	34,227	100.0
0.750	3	0.0	34,230	100.0
0.790	1	0.0	34,231	100.0
0.820	1	0.0	34,232	100.0
0.870	2	0.0	34,234	100.0
1.000	6	0.0	34,240	100.0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1994. 4/4~1995. 3/4)』

참고2 1995년 최임심 생계비 산정

<참고표 2-1> 1인취업 근로자가구(표준가구)의 가구별 평균치

(단위 : 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소비지출계	837,008	1,039,587	1,235,096	1,375,401	1,499,541	1,310,930	4,134,989	1,491,274
식료품	244,189	299,164	351,070	397,219	446,133	386,127	801,371	602,861
주거비	51,420	41,926	44,479	50,690	42,652	56,228	110,959	3,833
광열·수도	37,137	44,375	49,354	59,549	71,479	59,606	49,485	84,096
가구·집기	46,489	51,758	63,305	58,586	52,549	126,514	1,086,565	34,766
피복·신발	71,029	81,329	89,956	108,715	112,569	97,475	519,073	59,442
보건·의료	52,894	59,592	55,770	65,911	70,799	35,968	73,241	129,912
교육·교양	68,140	118,743	209,951	252,233	283,797	205,453	454,682	182,528
교통·통신	84,411	136,282	145,646	140,892	120,821	119,025	174,950	155,474
기타 소비	181,299	206,418	225,565	241,606	298,742	224,534	864,663	238,362
소비지출계	1,145,694	1,389,447	1,657,078	1,857,907	2,118,480	1,699,664	4,436,369	1,836,533
주거비	311,343	338,348	429,818	500,532	636,788	387,609	412,338	349,092
비소비지출	58,519	84,615	113,186	116,527	169,873	84,916	101,510	135,739
저축	568,186	774,758	936,130	914,864	1,051,185	849,897	1,469,926	1,151,418

<참고표 2-2> 표준가구 대 최빈값계층 평균 소비지출액 비교

(단위 : 원, %)

	표준가구 전체 (A)	최빈값계층가구(B)	B/A
2인	1,145,694	766,775	0.67
3인	1,389,447	978,096	0.70
4인	1,657,078	1,181,455	0.71
5인	1,857,907	1,289,731	0.69
6인	2,118,480	1,395,677	0.66

<참고표 2-3>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a$	$b$	$R^2$
소비지출	-33,402	417,559	0.94
식료품	-8,401	104,982	0.87
주거비	-7,074	102,128	0.67
광열·수도	-1,353	16,838	0.66
가구·집기	-1,233	12,726	0.22
피복·신발	-2,427	24,942	0.45
보건·의료	-1,803	17,567	0.25
교육·교양	3,360	12,435	0.50
교통·통신	-2,607	28,443	0.55
기타 소비	-5,904	61,946	0.66

<참고표 2-4>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비지출	384,157	701,510	952,059	1,135,804	1,252,745	1,302,882
식료품	96,581	176,360	239,337	285,512	314,885	327,456
주거비	95,054	175,960	242,718	295,328	333,790	358,104
광열·수도	15,485	28,264	38,337	45,704	50,365	52,320
가구·집기	11,493	20,520	27,081	31,176	32,805	31,968
피복·신발	22,515	40,176	52,983	60,936	64,035	62,280
보건·의료	15,764	27,922	36,474	41,420	42,760	40,494
교육·교양	15,795	38,310	67,545	103,500	146,175	195,570
교통·통신	25,836	46,458	61,866	72,060	77,040	76,806
기타 소비	56,042	100,276	132,702	153,320	162,130	159,132

<참고표 2-5>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비 지 출	0.31	0.57	0.77	0.92	1.01	1.05
식 료 품	0.28	0.50	0.68	0.81	0.90	0.93
주 거 비	0.22	0.41	0.56	0.69	0.78	0.83
광 열·수 도	0.31	0.57	0.78	0.93	1.02	1.06
가 구·집 기	0.18	0.32	0.43	0.49	0.52	0.50
피 복·신 발	0.25	0.45	0.59	0.68	0.71	0.69
보 건·의 료	0.28	0.50	0.65	0.74	0.77	0.73
교 육·교 양	0.08	0.18	0.32	0.49	0.70	0.93
교 통·통 신	0.18	0.32	0.42	0.49	0.53	0.53
기 타 소 비	0.25	0.44	0.59	0.68	0.72	0.71

<참고표 2-6>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 환산치

(단위 : 원)

	전체가구 평균치	4인가구 추정치	평균가구원수 가구 추정치	4인가구 환산치
주 거 비	396,521	295,328	27,948	427,467
광 열·수 도	47,577	45,704	42,801	50,804
가 구·집 기	57,220	31,176	29,682	60,099
피 복·신 발	87,050	60,936	58,043	91,388
보 건·의 료	57,704	41,420	39,695	60,212
교 육·교 양	167,844	103,500	86,840	200,045
교 통·통 신	132,512	72,060	68,226	139,958
기 타 소 비	216,547	153,320	145,724	227,835

<참고표 2-7> 가구별 최임심표준생계비의 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399,541	319,633	736,200	1,015,091	1,222,805	1,362,810
식료품	140,815	112,652	259,967	357,454	427,862	471,190
주거비	94,043	75,234	175,261	239,381	290,678	320,600
광열·수도	15,241	12,193	27,942	38,611	46,740	51,820
가구·집기	11,419	9,135	19,833	26,444	30,050	31,252
피복·신발	21,933	17,547	39,297	52,091	60,316	63,058
보건·의료	16,257	13,006	28,902	37,934	43,353	45,761
교육·교양	14,003	11,203	34,008	64,014	98,022	140,031
교통·통신	26,592	21,274	46,186	60,182	68,579	72,778
기타 소비	59,237	47,390	104,804	138,979	157,206	166,319
영 결 계 수	35.2	35.2	35.3	35.2	34.9	34.5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참고표 2-8>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의 조세액 및 사회보장분담금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 비 지 출	399,541	736,200	1,015,091	1,222,805	1,362,810
추 정 근 로 소 득	499,426	920,250	1,268,864	1,528,506	1,703,512
조 세 및 사 회 보 장	17,338	44,199	73,580	100,042	118,717
조 세 액	0	10,815	26,477	42,656	57,287
소 득 세	0	10,060	24,630	39,680	53,290
주 민 세	0	755	1,847	2,976	3,997
사 회 보 장 분 담 금	17,338	33,385	47,103	57,386	61,431
의 료 보 험	6,840	13,224	18,696	22,800	24,320
국 민 연 금	9,000	17,400	24,600	30,000	32,000
고 용 보 험	1,498	2,761	3,807	4,586	5,111

<참고표 2-9>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의 비소비지출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 비 지 출	399,541	736,200	1,015,091	1,222,805	1,362,810
추정근로소득	499,426	920,250	1,268,864	1,528,506	1,703,512
비소비지출계	18,338	46,199	77,080	105,042	123,718
조 세 액	0	10,815	26,477	42,656	57,287
소 득 세	0	10,060	24,630	39,680	53,290
주 민 세	0	755	1,847	2,976	3,997
사회보장분담금	17,338	33,385	47,103	57,386	61,431
의 료 보 험	6,840	13,224	18,696	22,800	24,320
국 민 연 금	9,000	17,400	24,600	30,000	32,000
고 용 보 험	1,498	2,761	3,807	4,586	5,111
기 타 비 소비	1,000	2,000	3,500	5,000	5,000

<참고표 2-10>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

(단위 : 원)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399,541	319,633	736,200	1,015,091	1,222,805	1,362,810
식 료 품	140,815	112,652	259,967	357,454	427,862	471,190
주 거 비	94,043	75,234	175,261	239,381	290,678	320,600
광열·수도	15,241	12,193	27,942	38,611	46,740	51,820
가구·집기	11,419	9,135	19,833	26,444	30,050	31,252
피복·신발	21,933	17,547	39,297	52,091	60,316	63,058
보건·의료	16,257	13,006	28,902	37,934	43,353	45,761
교육·교양	14,003	11,203	34,008	64,014	98,022	140,031
교통·통신	26,592	21,274	46,186	60,182	68,579	72,778
기타 소비	59,237	47,390	104,804	138,979	157,206	166,319
비소비지출	18,338	18,039	46,199	77,080	105,042	123,718
조 세 액	0	0	10,815	26,477	42,656	57,287
사회보장	17,338	17,039	33,385	47,103	57,386	61,431
기타비소비	1,000	1,000	2,000	3,500	5,000	5,000
표준생계비	417,879	337,671	782,399	1,092,171	1,327,847	1,486,527

주 : \*는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參考文獻

- 강순희, 『1995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3.
- 국민연금 실무편람,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1996.
- 국세청,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1993~96.
- 김초일, 「식료품비 산정방법」, 한국식품위생연구원, 1997.
- 물가정보사, 『종합물가정보』, 1995. 12. 및 1996. 12.
- 윤진호, 『도시근로자 생계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6. 2.
- 의료보험 업무편람, 「표준보수월액조건표」(령 제181조).
- 정인수, 『1996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6. 6.
- 조우현, 『'87, '88 표준생계비의 산정과 몇 가지 문제점』, 한국경제연구 제 38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0. 6.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6. 12.
- \_\_\_\_\_, 『'95. 9~'96. 8 적용 최저임금심의 의결경위』, 1996, 12.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4, 1995, 1996.
- \_\_\_\_\_, 『도시가계조사』, 원TAPE 1993, 1994, 1995, 1996.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997.
- 한국용용통계연구원, 『유통물가통계』, 1995, 1996.
- Ehrenberg, Ronald G. and S. Robert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1994.